中国南方航空股份有限公司韩国营销中心

CHINA SOUTHERN AIRLINES CO., LTD KOREA MARKETING & SALES CENTER

문서번호 : 20-CZ301

수　　신 : 각 여행사 및 대리점

발　　신 : 중국남방항공 한국지사

제　　목 : 대사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항공권 처리 안내(수정)

가. 귀 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.

나. 대사관 공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여정의 항공권 발권 시 탑승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예 : 인천-광저우-상해, 대사관 공지에 근거하면 첫 도착지인 광저우에서 14일 격리 후 이동이 필요한데 바로 당 일 또는 격리기간에 부합하지 않는 기간 내에 경유하는 항공편으로 발권한 경우

다. 위와 같은 항공권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처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당일 발권된 항공권 : 여행사 자체 보이드

2. 이전 발권되어 보이드 불가능한 항공권 : 사용 운임규정 따라 리이슈 (대사관 공지 조건에 부합하는 일정으로) 혹은 환불 진행

라. 각 담당자께서는 대사관 공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발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지 및 발권된 항공권을 상시 체크 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10월 19일

중국남방항공 한국지사